

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양승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7.

발의자 : 양승조 · 윤소하 · 이학영

전혜숙 · 박주민 · 이재정

권미혁 · 정춘숙 · 김상희

이찬열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%(2016년 기준)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·장애인·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(안 제48조제2항), 공공주택의 건설·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(안 제3조의2제2항),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 중 “저소득층의”를 “청년층·장애인·고령자·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”로 한다.

제48조제2항 전단 중 “고령자”를 “고령자·신혼부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